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19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 : 황보승희 · 박대수 · 전봉민

추경호 • 이 영 • 백종헌

유경준 · 송언석 · 배현진

박대출 · 양금희 · 김기현

김예지・안병길・金炳旭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되거나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되어있음.

그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관련 판결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피처분자가 별도로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'범죄경력조회 및 수사 경력조회'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9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4조의2(범죄 및 수사경력조회)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법령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거 나, 검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 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94조의2(범죄 및 수사경력조 |
| | 회)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|
| | 취소·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|
| | 법령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|
| | 확정판결을 받았거나, 검사가 |
| |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는 |
| |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 |
| | 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|
| | <u>수 있다.</u> |